제970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해양수산부)	1.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질병관리 기준(신설) ㅇ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질병관리기준을 마련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전체	1.비중요
2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안 (농촌진흥청)	1.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강화) ㅇ 농약품목 및 원제 등록 시험성적서 제출 시 꿀벌 독성 시험 항목 추가 ㅇ 품목등록제한 농약에 ‘다이쾃디브로마이드’ 추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제5조	1.비중요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강화) ㅇ 가축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을 추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2.살처분 명령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강화) ㅇ 가축 등에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 가축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전염병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을 추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3.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강화) ㅇ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저장보관된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해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4.가축운송업자의 분뇨관리 및 조치(신설) ㅇ 가축운송업자는 분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 누수방지 바닥재 등을 구비하여야 함 ㅇ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차량외부로 유출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요건(신설) ㅇ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지정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사업시행자의 결정·변경(신설) ㅇ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예정자 결정을 위한 동의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7.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징구 시 동의자의 인적 사항 및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개략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사업시행예정자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신설) ㅇ 사업시행예정자가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서, 법률에 따른 동의서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공고 필요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설계도서, 자금계획, 건축물 명세와 개·보수계획, 토지등권리자 명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동의를 받을 경우 건축물 설계개요, 사업비용,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6조 4.개발행위허가 생략대상(신설) ㅇ 도심복합개발법 제10조제1항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8.비중요 9.비중요 10.비중요 1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혁신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관상용 죽목의 임시적재에 대해 행위허가 대상의 예외를 규정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5.사업시행자의 요건(신설) ㅇ 신탁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의 위탁계약체결 및 부동산개발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등록한 법인으로 요건을 정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6.토지등소유자의 인정요건(신설) ㅇ 1세대 1주택자의 소유기간은 10년, 거주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의 전매제한 예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7.신고로의 갈음요건 (신설) ㅇ 사업비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변경,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의 변경 등의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신고로써 갈음하고, 계산착오·오기 등 단순정정, 시행규정 변경에 따른 경우,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1조 8.지연이자의 기준(신설) ㅇ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고,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10으로 하며,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9.통지·공고·공개의 범위(신설) ㅇ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절차 시 사업시행인가 내용, 복합개발사업의 개요, 분양신청 기간·장소·자격·방법 등을 통지하고, 그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사록,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서 등의 서류를 공개하여야 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1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0.주택공급의 규모(신설) ㅇ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심복합개발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고 잔여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 부속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의 50으로 정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7조 11.보상금의 기준(신설) ㅇ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한편, 폐업 또는 4개월 이내의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을 고려하도록 정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5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포집시설 설치계획 신고 및 수송사업의 승인(신설) ㅇ (포집사업자)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ㅇ (수송사업자) 수송수단별 일정한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수송사업 승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0조 2.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등(신설) ㅇ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등) 최초 점검 및 정기 점검 의무 부과,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ㅇ (안전관리자 선임)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2명 이상 선임 필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요구, 선임신고 및 재선임 기간에 대한 제한 ㅇ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안전관리 외직무 배제,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 및 대행자의 범위 ㅇ (안전검사의 실시) 안전검사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실시유예 기간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중요 6.비중요 7.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 및 선정 등(신설) ㅇ (탐사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수행능력, 탐사구역 권한자의 동의 등을 확인할 수 서류를 탐사승인 신청 시 제출 ㅇ (탐사승인 기준) 탐사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탐사승인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의 구체화 ㅇ (탐사실적 제출) 탐사실적 제출기간 설정 및 탐사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화 ㅇ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 시 제출 서류)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 위치 등 추가 제출 서류 범위 ㅇ (저장소의 폐쇄사유) 자원안보 등 저장소 폐쇄 명령이 가능한 추가 사유의 구체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4.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 등(신설) ㅇ (저장소 기준 및 저장사업 허가의 심사기준) 저장소가 갖추어야 하는 용량, 안정성 등 기준의 구체화, 저장사업 허가의 심사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의 구체화 ㅇ (폐쇄된 저장소의 원상복구) 원상복구 기준, 원상복구 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ㅇ (저장소의 사용 신고) 저장소 사용신고서의 제출 ㅇ (사업의 승계신고) 저장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신고 서류 제출 ㅇ (사업 개시 신고 및 휴·폐업 허가) 저장사업 개시 신고서 제출, 개시 후 휴·폐업 허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ㅇ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명령 이행 결과 보고 의무 ㅇ (저장사업 허가의 행정처분기준) 저장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70조 5.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저장소 운영 등(신설) ㅇ (저장소 모니터링계획의 승인) 모니터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화, 모니터링 기간 설정, 모니터링계획 이행결과의 보고 ㅇ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저장소에 주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압축 관련 기준 구체화 ㅇ (저장소 운영) 누출 통보가 필요한 기준, 저장소의 운영기간 중 기록·보존해야 하는 정보, 저장소의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정기검사 기준·주기·제출 서류 범위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6.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설) ㅇ (인증 대상 및 기준) 인증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제품의 범위, 상용화·성능 및 안전의 우수성 등 인증 기준 구체화 ㅇ (인증 절차) 신청자에 대한 인증 비용 부담,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정함 ㅇ (인증 표시) 인증 유효기간 내 제품 등 표시, 인증표시 사용 내용 및 실적 자료의 제출 요구, 인증 표시 포함 사항 등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7.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신설) ㅇ (전문기업)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요건,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절차 ㅇ (전문기관 등) 전문기관 등 지정 절차, 전문기관 등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등 보유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60조, 제61조	
6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등(신설) ㅇ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등) 최초 점검 및 정기 점검 의무 부과,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ㅇ (안전관리자 선임)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2명 이상 선임 필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요구, 선임신고 및 재선임 기간에 대한 제한 ㅇ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안전관리 외직무 배제,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 및 대행자의 범위 ㅇ (안전검사의 실시) 안전검사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실시유예 기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2.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 및 선정 등(신설) ㅇ (탐사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수행능력, 탐사구역 권한자의 동의 등을 확인할 수 서류를 탐사승인 신청 시 제출	1.비중요 2.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ㅇ (탐사승인 기준) 탐사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탐사승인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의 구체화 ㅇ (탐사실적 제출) 탐사실적 제출기간 설정 및 탐사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화 ㅇ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 시 제출 서류)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 위치 등 추가 제출 서류 범위 ㅇ (저장소의 폐쇄사유) 자원안보 등 저장소 폐쇄 명령이 가능한 추가 사유의 구체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 등(신설) ㅇ (저장소 기준 및 저장사업 허가의 심사기준) 저장소가 갖추어야 하는 용량, 안정성 등 기준의 구체화, 저장사업 허가의 심사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의 구체화 ㅇ (폐쇄된 저장소의 원상복구) 원상복구 기준, 원상복구 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 ㅇ (저장소의 사용 신고) 저장소 사용신고서의 제출 ㅇ (사업의 승계신고) 저장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신고서류 제출 ㅇ (사업 개시 신고 및 휴·폐업 허가) 저장사업 개시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신고서 제출, 개시 후 휴·폐업 허가 신청 관련 서류 제출 ㅇ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명령 이행 결과 보고 의무 ㅇ (저장사업 허가의 행정처분기준) 저장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설) ㅇ (인증 대상 및 기준) 인증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제품의 범위, 상용화·성능 및 안전의 우수성 등 인증 기준 구체화 ㅇ (인증 절차) 신청자에 대한 인증 비용 부담,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정함 ㅇ (인증 표시) 인증 유효기간 내 제품 등 표시, 인증표시 사용 내용 및 실적 자료의 제출 요구, 인증 표시 포함 사항 등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8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소방청)	1.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신설) ㅇ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체	1.비중요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배출권 할당의 취소기준(신설) ㅇ 취소기준 –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5이상 감소 ㅇ 취소내용 △ (0~15%)감소시 미취소 △ (15~25%) 감소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 50% 취소 △ (25~50%) 감소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 75% 취소 △ (50~100%)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강화) ㅇ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기준 –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최근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 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3.배출권거래 행정처분(신설) ㅇ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근거규정 및 등록취소시 보유 배출권에 대한 처분 절차 및 근거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의2 4.자발적 배출권 할당 신청 가능 업체 요건(신설) ㅇ 자발적 참여기업의 기준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 – 기본법 제27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처한 사실이 없을 것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온실가스검증협회 설립허가 절차(신설) ㅇ 온실가스검증협회 설립허가신청 제출서류 - 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재산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의 수행계획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6.배출권의 중개거래 절차(신설) ㅇ 법률에서 정한 시장 참여자 외에,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시장참여자(자산운용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을 하지 않은 증권사(투자매매업자), 연기금, 은행, 보험사 등)들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도록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36조의4, 제36조의5, 제36조의6, 제36조의7, 제36조의8, 제36조의9, 제36조의10, 제36조의11,제36조의12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투약 및 처방을 금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규정 (신설) ○ ‘프로포폴’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투약·처방 금지 성분으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4	1.비중요
1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보건복지부)	1.치료보호기관 설치 · 지정 기준(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 상담시설, 치료프로그램실 / (장비) 판별검사 장비, 보조적 검사장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 2.치료보호기관 평가 · 취소(신설) ○ 치료보호기관 평가 시기(3년) 및 재지정 요건* 및 지정·재지정 취소 요건 규정 *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치료보호 실적,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 3.치료보호기관 장의 보고시점 단축(강화) ○ (현행) 치료보호기간 종료 10일 전 보고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개정) 치료보호기간 종료 1개월 전 보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 제18조	
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1.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실시기준 설정(신설) ○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대상자 안전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실시 기준 마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재생의료기관의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등 제출 의무(신설) ○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심사받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포함한 치료계획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3.복지부장관의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신설) ○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과 시설, 장비, 인력 등이 부합하는지 현장점검 할 수 있도록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심의위원회에 대한 재생의료기관의 보고의무 신설(신설) ㅇ 재생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현황 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출주기는 실시계획별로 상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5.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거짓·과대 광고 금지 내용 확대(강화) ㅇ 재생의료기관이 적합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등 거짓·과대 광고 할 수 없도록 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